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67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671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단52283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형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백혜연

변론종결 2022. 8. 17.

판결선고 2022. 10.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가단522834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2017. 6. 1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610,7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3행의 “2017. 5. 22.”를 “2017. 5.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1) 피고의 주장

D은 2018. 7.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이 사건 임차권에 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킴으로써 H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H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 전출신고 이전인 2017. 6. 19. 이미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뒤에 비로소 발생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H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2019. 2. 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6. 19.에는 위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D과 C은 '이 사건 임차권을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이 사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D이 2017. 5. 19. 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201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하였으며, 같은 날 C은 피고로부터 19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제1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이어 C은 2017. 6. 16. 위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한 후 제1차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피고와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2차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H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H은행에게 보험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④ 실제로 원고가 H은행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D,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재산의 증가

1) 피고의 주장

제2차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30,000,000원으로 제1차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20,000,000원이 적은 금액이고, 제1차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제2차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에 비추어,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은 오히려 20,000,000원이 증가한 것이므로,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감소되거나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제1차근저당권의 말소 및 제2차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제1차근저당권설정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일부 변제된 대출금액을 반영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축한 계약으로 보일 뿐이고, 이미 제1차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C가 무자력이 된 이후에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종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일부가 감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책임재산의 증가로 볼 수는 없으며, 제1차근저당권의 말소 이후 체결된 제2차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석현, 판사 최지아

별지